

□ “국내 유료방송에서 최초로 방송된 해당 채널 내의 방송프로그램 방송시간” 의 세부기준

○ (기본원칙) 방송프로그램의 동일성을 기준으로 최초로 방송된 방송 프로그램 여부를 판단

※ 스포츠 중계 프로그램, 오디션 프로그램 등의 기존 방송내용을 재활용한 프로그램의 경우, 인력 또는 자본의 추가 투자 등 재제작 과정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 한해 새로운 방송프로그램으로 평가

○ (동일성 판단기준 예시)

구 분	설 명	새로운 방송 프로그램 여부
스포츠	① 기 방송된 여러 스포츠 경기의 주요장면을 하이라이트 형식으로 재편집한 프로그램으로서, 기존 방송물의 단순한 클립 모음(잘라 붙이기) 형태인 경우 * (예) 특정 축구선수의 골 모음 100선	X
	② 기 방송된 여러 스포츠 경기의 주요장면을 재편집한 프로그램으로서, 별도의 재제작 과정*을 거친 경우 * (예) 패널 출연, 해설 추가 등	O
오디션 프로그램	④ 기 방송된 여러 회차의 주요장면을 하이라이트 형식으로 재편집한 프로그램으로서, 기존 방송물의 단순한 클립 모음(잘라 붙이기) 형태 * (예) 특정 지원자의 예선부터 결승까지 무대 모음	X
	⑤ 기 방송된 여러 회차의 주요장면을 재편집한 프로그램으로서, 별도의 재제작 과정*을 거친 경우 * (예) 패널 출연, 해설 추가 등	O
영화 /드라마 /예능	⑥ 특정 콘텐츠의 내용을 소개하는 프로그램	O
	⑦ 영화/드라마의 줄거리를 요약하여 보여주는 프로그램(단, 별도의 재제작* 과정을 거친 경우에 한함) * (예) 패널 출연, 줄거리를 설명하는 나레이션 추가 등	O
	⑧ 더빙으로 기방영되었던 콘텐츠에 한글 자막을 달아 방영하는 프로그램	X
	⑨ 한글 자막으로 기방영되었던 콘텐츠에 더빙을 입혀 방영하는 프로그램	O

□ 「PP평가 표준안」 적용 제외대상 관련

○ 직사채널과 가이드채널도 적용제외대상에 해당

- 직사채널은 플랫폼사와 채널계약 대상이 아니므로 적용 제외
- 가이드채널은 그 자체로서 콘텐츠를 제공하는 채널이 아닌,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상의 편의(안내)를 위한 채널이므로 적용 제외
- 법령상 의무운용채널 중, 유료방송사가 해당 채널을 반드시 구성할 수밖에 없어 종료가 불가능한 채널(대체 채널이 없는 경우)도 적용 제외대상에 해당

※ (예) 장애인의 복지를 위한 채널로서 복지TV는 대체 채널이 없어 적용 제외대상, 공익채널의 경우 분야별 2개 이상의 채널이 있으므로 적용대상(현재기준)